

▶ 재료비 사용안내기준

-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학사운영을 위한 학생지도에 소요되는 경비
- 계획안을 근거로 도출된 결과물과 직접적 연관성이있는 물품이어야 함
- 불확실한 경우에는 센터에 사전문의 후 구매(아이디어북 게시판 운영예정-10월부터)

가능한 품목(배송료 포함)	불가능한 품목
1.결과물 제작을 위한 부품, 소모품 2.실험 및 실습용 시약 및 시료구입비 3.분석료 4.소프트웨어 5.공정비(가공비) 6.클라우드, chatgpt 등(구독료) 7.30만원 미만의 완제품 (30만원 미만의 완제품은 계획안을 토대로 구매해야하며, 결과물과 직접적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됨, 구매사유서 필수첨부) ※현금사용 후, 현금영수증(인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필수 이나, 부득이한 경우(구독료), 팀장카드로 구매 후 증빙(원화 표시 지출 증빙, 이체내역, 카드결제사유기재) 예시)시구독료에 한하여 가능함 ※ 현금영수증발행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센터와 사전 협의바람	1.사무용품성 재료 (A4용지, 프린터 토너, 프린터 잉크, 풀, 가위 등) 2.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재료 3. 컴퓨터 부품(HDD,VGA, RAM 등) 4. 범용성 물품(키보드,마우스,외장하드,USB,SD카드) 5. 도서구입비 6. 자문비 7. 설문답례품 8.해외직구(달러결제로 현금영수증 불가의 이유) 9.구매대행(구매대행의 경우, 물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 현금영수증 처리해주므로 불가함)

☞ 해당 재료비는 현금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개인이 아닌, 인천대학교 사업자번호로 발행)이 원칙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않은 경우, 재료비 일체 불인정 대상입니다.